



보도일시	2019.9.5.(목) 09:00부터 보도 가능	
담당	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	팀 장 문종숙 (044-200-4311) 사무관 신용호 (044-200-4312) 사무관 안석우 (044-200-4313) 조사관 정성혁 (044-200-4314)
	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	과 장 안종일 (044-215-4630) 사무관 심지혜 (044-215-4632)
	법무부 상사법무과	과 장 명한석 (02-2110-3167) 서기관 강혜정 (02-2110-3631)
	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	과 장 김호성 (044-203-4380) 사무관 조은형 (044-203-4381)
	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	과 장 최경일 (044-202-3650) 사무관 양진혁 (044-202-3652)
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	과 장 조오현 (044-202-7587) 사무관 윤권상 (044-202-7602)
	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	과 장 장대교 (042-481-8957) 사무관 성항용 (042-481-3981)
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과 장 김연준 (02-2100-2680) 사무관 김미정 (02-2100-2681)

## “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”

- 당정협약에서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추진방안 논의 -

- 더불어민주당(이하 ‘당’)과 정부(기재부, 법무부, 산업부, 복지부, 고용부, 중기부, 공정위, 금융위 등 8개 부처)는 2019년 9월 5일(목)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“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”을 논의했다.
-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(시행령·시행규칙·고시·예규·지침 등)을 정비하는 것이다.
  -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,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,
  -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으로써,
  -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, 소비자, 그리고 대·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.

## < 주요 개선사항 >

### (1) 기업 소유·지배구조 개선

#### 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(법무부·금융위)

- 우선, 상장회사의 주주권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.
- 이를 위해, ①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,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,
- ②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,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·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것이다.

#### ②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(금융위)

-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 증가('19.6월말 기준 100개 기관 도입)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.
- 이러한 차원에서,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(이른바 '5%룰')를 보완하여, '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'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.

#### ③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 (법무부·금융위)

-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, 임원(이사감사)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 제공 정보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.
- 이에 따라, 앞으로는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,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에게 제공된다.

#### ④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(법무부)

-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.
- 이를 위해, ①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, ②사외이사의 장기 재직(해당회사 6년이상, 계열사 합산 9년이상)도 금지할 계획이다.

⑤ **지주회사 관련 :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** (공정위)

- 단순·투명한 소유·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도 도입될 것이다.
-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·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**공동 손자회사 출자**가 앞으로는 금지될 것이다.

⑥ **지주회사 관련 :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** (공정위)

-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**부당내부거래** 우려에 대응하여 **시장의 자율감시수단인 공시제도**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.
- 이에 따라,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(자·손자·증손회사) 간 **대규모 내부거래**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.

⑦ **지주회사 관련 : 배당외수의 공시의무 부과** (공정위)

-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, 특히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**배당외수익**(브랜드수수료 등)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**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** 등의 우려가 있다.
- 이에 대한 **시장감시기능을 강화**하기 위해, ▲이들 회사 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하고, ▲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할 계획이다.

⑧ **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** (공정위)

- **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**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**예측가능성을 제고**하기 위해,
- **심사지침을 마련**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.

## [2] 국민연금 개혁\*

\*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('18.7월)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

### [9]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(복지부)

-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
- 이를 위해, ▲기금위원회 위원(위촉직 위원 중 일부)의 자격요건 신설, ▲소위원회 체계 구축, ▲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\*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병행 예정

### [10]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(복지부)

-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.

### [11] 국민연금 주주활동 관련 보완장치 마련 (금융위·복지부)

- 현재 국민연금은 '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' 단기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나, '경영권 영향' 목적이 아니라도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, 미공개정보 관련 보완장치가 필요하다.
- 이에 따라, 국민연금이 내·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,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## [3]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\*

\* 「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」('19.7월)의 후속조치 성격

### [12] 공공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 부여 (기재부)

-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乙의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.
- 우선,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(예: 계약체결일 이후 15일) 명문화할 계획이다.

**13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'불가항력'의 범위 합리화** (기재부)

- 아울러,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(現)국내 한정→(改)해외 포함으로 확대\*할 계획이다.

**14 공기연장 시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 합리화** (기재부)

- 또한,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(공공기관)가 조정할 경우,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.

#### **4) 경제적 약자 보호**

**15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** (공정위)

- 소상공인, 하도급업체,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.
  - 우선, 현행 규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여 가맹점주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가 있어,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할 계획이다.

**16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** (공정위)

-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,
  -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(경감사유 조정·구체화, 경감폭 조정 등)할 예정이다.

**17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** (중기부)

- 중기조합의 공동사업(수주, 판매 등)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도모한 개정 중기조합법('19.8월)을 뒷받침하기 위해
  - ▲규정 적용을 면제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, ▲면제 제외 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.

## [5] 소비자 권익 보호

### [18]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(공정위)

- 특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-판매자 간 비대칭성이 매우 높아 정보 미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,
  -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.

### [19]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(금융위)

- 국민 만족도가 낮은 분야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, 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.
  - 우선, 원칙적으로 CEO가 ‘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’의 의장직을 수행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 책임을 강화하고,
  -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(CCO)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며,
  -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▲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▲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.

### [20]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(공정위)

- 대표적인 공정경제 취약분야인 상조시장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무부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
  -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.

## [6]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

### [21]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(공정위·중기부)

- 대기업-1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개선 성과가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,
  - 대·중소기업 간 공정거래·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하여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.

22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(산업부)

-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,
  - ▲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(1개 업종 → 대규모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), ▲정성분석 및 계량지표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병행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.

(7) 기타 과제

23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(고용부)

-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.  
(wage.go.kr, 매년 7월, '19년은 12월)

【첨부1】 과제별 이행완료 계획

【첨부2】 하위법령 제·개정 과제 세부내용

< 총 7개 분야 23개 과제 >

구분	정책명	완료시기	부처
① 기업 소유·지배 구조 개선	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	12월 20년1Q	법무부 금융위
	②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	20년1Q	금융위
	③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	12월 20년1Q	법무부 금융위
	④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	12월	법무부
	⑤ 지주회사 관련 :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	12월	공정위
	⑥ 지주회사 관련 :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	12월	공정위
	⑦ 지주회사 관련 : 배당외수익 공시의무 부과	12월	공정위
	⑧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	12월	공정위
② 국민연금 개혁	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	20년1Q	복지부
	⑩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예측가능성 제고	9월	복지부
	⑪ 국민연금 주주활동 관련 보완장치 마련	20년1Q	금융위 복지부
③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	⑫ 공공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 부여	12월	기재부
	⑬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'불가항력'의 범위 합리화	12월	기재부
	⑭ 공기연장 시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 합리화	12월	기재부
④ 경제적 약자 보호	⑮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	12월	공정위
	⑯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	20년2Q	공정위
	⑰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	20년2월	중기부
⑤ 소비자 권의 보호	⑱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	12월	공정위
	⑲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	10월	금융위
	⑳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	20년2Q	공정위
⑥ 상생협력 촉진	㉑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	12월	공정위 중기부
	㉒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	12월	산업부
⑦ 기타 과제	㉓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	12월	고용부

**(1) 기업 소유·지배구조 개선**

**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** (법무부·금융위)

- 우선, 상장회사의 주주권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.
  - 이를 위해, ①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,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\*하는 한편,
  - ②전자투표 편의를 제고\*\*하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, 의결권 행사 변경·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것이다.
- \* ▲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 제공(상법 시행령 개정/ '19.12월), ▲전년도 지급된 임원 보수총액 정보 제공 (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/ '20.1분기)
- \*\* ▲본인인증수단 다양화[<sup>(現)</sup>공인인증서→<sup>(改)</sup>공인인증서+핸드폰·아이핀·신용카드], ▲의결권 행사내용 변경·철회 허용, ▲전자투표 참여가능 여부를 사전(주총 3일전) 통지 (이상 상법 시행령 개정/ '19.12월)

**②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** (금융위)

-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 증가(' 19.6월말 기준 100개 기관 도입)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.
  - 이러한 차원에서,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(이른바 '5%룰\*')를 보완하여, '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'의 범위를 합리화\*\*할 계획이다. (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/ '20.1분기)
- \* 주식 등을 5% 이상 대량보유시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 등을 5일내 보고·공시하되, 그 보유목적이 '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'이 아닌 경우 보고시한 및 보고내용 완화
- \*\* ▲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상법상 권한(위법행위 유지청구권, 해임청구권 등)을 행사하는 경우 제외, ▲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(예: 감사위원 전문성 요건 강화) 제외

**③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** (법무부·금융위)

- 마찬가지로 주주권한 강화 차원에서, 회사의 임원(이사·감사)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 제공 정보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.

<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 >

현행	확대	관련법령 /완료예정시기
①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② 후보자와 해당회사 간 최근 3년 간 거래내역	③ 후보자의 체납 사실 ④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, ⑤ 법령상(예: 특경가법 등)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	상법 시행령 개정 / '19.12월
	⑥ 세부 경력사항 ⑦ 직무 수행계획(사외이사) ⑧ 이사회 추천사유	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/ '20.1분기

**④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** (법무부)

-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.
- 이를 위해, ① 유사 법령\* 대비 짧은 수준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\*\*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,
- ② 현재는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바, 앞으로는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(해당회사 6년 이상, 계열사 합산 9년 이상)을 금지할 계획이다. (이상 상법 시행령 개정/ '19.12월)

\* 금융회사지배구조법 : 3년

\*\* A기업 계열사로부터 퇴직한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A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

**⑤ 지주회사 관련 :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** (공정위)

- 단순·투명한 소유·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도 도입될 것이다.
-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·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\*될 것이다. (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/ '19.12월)

\* 신규 손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(즉 기존 공동 손자회사는 허용)

**⑥ 지주회사 관련 :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** (공정위)

-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우려\*에 대응하여 시장의 자율감시수단인 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.

\*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%에 달하며,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 ('18.7월, 공정위 자체 실태조사)

- 이에 따라,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(子·孫子·曾孫회사)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\*를 부과할 예정이다.

(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/ '19.12월)

\*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 등의 대규모내부거래를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(현재 지주회사는 同 의무 면제).

**⑦ 지주회사 관련 : 배당외수익 공시의무 부과** (공정위)

-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, 특히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\*의 비중이 상당\*\*하고 이로 인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다.

\* 예: 브랜드수수료, 경영컨설팅수수료, 부동산임대료 등

\*\* 배당외수익 비중(43.4%) > 배당수익 비중(40.3%) ('18.7월, 공정위 자체 실태조사)

- 이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, ▲이들 회사 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\*을 공시대상으로 하고,

▲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할 계획이다. (기업집단 현황고시 개정/ '19.12월)

\* 브랜드수수료 거래내역은 공시하도록 既개선('18.4월)

**⑧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** (공정위)

-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,

-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. (예규 제정/ '19.12월)

\* ▲정상가격 산정방법, ▲행위유형별 적용요건, ▲상당히 유리한 조건·규모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의 구체적 기준 및 일감몰아주기 적용 예외사례 등

## [2] 국민연금 개혁\*

\*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('18.7월)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

### [9]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(복지부)

-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
- 이를 위해, ▲기금위원회 위원(위촉직 위원 중 일부)의 자격요건 신설, ▲소위원회 체계 구축, ▲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 (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/ '20.1분기)

\*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병행 예정

### [10]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(복지부)

-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\*을 마련할 예정이다. (가이드라인 제정/ '19.9월)

\* ①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「**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**」 / ②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 해소를 위한 「**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**」 / ③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관련 「**위탁운용사에 대한 가점부여 방안**」

### [11] 국민연금 주주활동 관련 보완장치 마련 (금융위·복지부)

- 현재 국민연금은 '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' 단기차익 반환의무\*를 면제받고 있으나, '경영권 영향' 목적이 아니라도 경영진 면담 등 주주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, 미공개정보 관련 보완장치가 필요하다.

\* 내부자(임직원 및 지분을 10%이상의 주요주주)는 6개월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 부담 (내부정보 취득 가능성이 높은 주주의 불공정행위 예방 취지)

- 국민연금이 내·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,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 ('20.1분기)

\* 복지부 규정(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) 및 금융위 규정 (단기 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, 신고 등에 관한 규정) 개정

### [3]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\*

- \* 「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」('19.7.9.)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,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취지

#### [12] 공공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 부여 (기재부)

-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乙의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.
- 우선,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(예: 계약체결일 이후 15일) 명문화할 계획이다. (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/ '19.12월)

#### [13]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'불가항력'의 범위 합리화 (기재부)

- 아울러,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(現)국내→(改)해외로 확대\*할 계획이다. (공사계약일반조건·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/ '19.12월)
- \* 해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(예: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외 항구 폐쇄로 공사자재 조달에 애로발생)으로 계약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방(민간기업)이 면책되도록 개선

#### [14] 공기연장 시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 합리화 (기재부)

- 또한,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(공공기관)가 조정할 경우,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. (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개정/ '19.12월)

### [4] 경제적 약자 보호

#### [15]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(공정위)

- 소상공인, 하도급업체,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.
- 우선, 현행 규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 또는 단기간의 영업정지와 같은 경미한 범위반만으로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여 가맹점주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가 있어,

-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·정비\*할 계획이다. (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/ '20.1분기)

\* 예 : 즉시해지 사유였던 '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·신용을 훼손한 경우'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 → 삭제

#### 16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(공정위)

-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,

-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**벌점제도\***를 정비(경감사유 조정·구체화\*\*, 경감폭 조정 등)할 예정이다. (하도급법 시행령 개정/ '20.2분기)

\*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 위반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,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는 경우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부과되, 벌점경감제도 함께 운영 중

- \*\* ▲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,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경감사유를 선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, ▲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감사유 신설

#### 17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(중기부)

- 중기조합의 공동사업(수주, 판매 등)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**담합 규정** 적용을 예외적\*으로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도모한 개정 중기조합법('19.8월)을 뒷받침하기 위해

- ▲ 규정 적용을 면제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(중기조합법 시행령 개정/ '20.2월)하고, ▲ 면제 제외 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. (고시 제정/ '20.2월)

\*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면제

## 5 소비자 권익 보호

#### 18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(공정위)

- 특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-판매자 간 비대칭성이 매우 높아 정보 미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,

-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\*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. 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/ '19.12월)

\* 생활화학제품의 구성성분,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

**19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** (금융위)

- 국민 만족도가 낮은 분야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, 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.
- 우선, 원칙적으로 CEO가 ‘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\*’의 의장직을 수행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 책임을 강화하고,
  - \* 소비자보호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, 제도 개선사항,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상품 개발·영업부서간 협의·조정 등 수행 (종래 의장은 CCO: Chief Customer Officer)
-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(CCO)의 독립성\*과 권한을 강화\*\*하며,
  - \* 자산규모 및 민원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독립 CCO 선임기준 마련 :
    - ①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(은행·증권·보험 : 10조원 / 카드·저축은행 : 5조원)
    - ②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업종의 4% 이상인 회사는 독립 CCO를 두어야 함
  - \*\* ‘상품개발-영업-계약-사후관리’ 등 업무 전반의 소비자 피해가능성 점검·관리, 소비자보호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CCO 조사 후 대표이사 보고 등
-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▲기능을 대폭 추가\*하고 ▲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. (이상 금융소비자 모범기준 개정/ '19.10월)
  - \* 소비자 보호실태 점검, 신상품 출시 前 소비자 영향분석, 상품설명서 제·개정안 사전검토, 광고 심의결과 검토,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등

**20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** (공정위)

- 대표적인 공정경제 취약분야인 상조시장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무부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
-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. (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/ '20.2분기)
  - \* 소비자들이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했던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 가입한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

## [6]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

### [21]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(공정위·중기부)

- 대기업-1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개선 성과가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,
  - 대·중소기업 간 공정거래·동반성장 **협약평가제도\***를 개선\*\*하여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**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**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. (협약평가기준 개정/ '19.12월)
- \* 대·중견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'협약'을 체결하면, 공정위는 대·중견기업의 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 후 우수한 기업에게는 직권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
- \*\* (개선안 예시) 현재는 대기업에 대한 협약이행평가지,
  - ▲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대금(A) 대비,
  - ▲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동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대금(B)의 비중(B/A)이 (現)1.7% 이상이면 관련 평가항목 만점 부여 → (改)만점기준 상향(예: 10%) 검토

### [22]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(산업부)

-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,
  - ▲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(1개 업종 → 대규모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), ▲ 정성분석 및 계량지표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병행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. 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/ '19.12월)

## [7] 기타 과제

### [23]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(고용부)

-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\*할 예정이다. (wage.go.kr, 매년 7월, '19년은 12월)
- \* 기업규모·산업 등 기업특성을 기반으로 성·연령·학력·근속년수 등 근로자 속성을 교차 분석하여 상세한 임금수준 분포현황(평균값, 중간값, 상위 25%값, 75%값)을 공표